



보도시점 2025. 6. 24.(화) 12:00 / 배포 2025. 6. 24.(화) 08:30
< 6. 25.(수) 조간 >

엔터테인먼트 업계 '하도급계약서 발급' 관행 정착을 위한 동의의결 확정·시행

- 용역·제조 분야 최초 동의의결로 '공정'과 '상생'의 하도급거래질서 정착 기대 -

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한기정, 이하 '공정위')는 2025년 6월 9일, 5개 엔터테인먼트사*(이하 '엔터 5사')의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'하도급법') 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**안을 최종 확정하였다.

* ▲(주)하이브, ▲(주)에스엠엔터테인먼트, ▲(주)와이지엔터테인먼트, ▲(주)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, ▲(주)스타쉽엔터테인먼트

** 동의의결 제도: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피해구제,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해당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방안의 신속한 이행에 초점을 두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(하도급법 제24조의9)

공정위는 2023년 7월부터 엔터 5사가 중소기업자에게 음반·굿즈*·영상 콘텐츠 제작 및 공연 관련 역무** 등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발급한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다.

* 특정 아티스트와 관련된 응원봉, 인형 등

** 무대 및 세트구성, 조명설치 및 운영, 음향설비 설치 및 운영, 특수효과 구현 등

※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르면 엔터 5사는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,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▲제조등의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▲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여야 한다.

조사 과정에서 엔터 5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하도급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2024년 4월 ~ 5월 사이에 동의의결을 신청하였으며, 공정위는 2024년 12월 2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*한 바 있다.

* 2024. 12. 12.(조간) 보도자료(공정위, 엔터테인먼트 5사 대상 동의의결 절차 개시) 참고

이후 공정위는 시정방안의 타당성, 적절성을 엄밀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하도급법에 따라 2025. 2. 4.부터 3. 21.까지(49일) 수급사업자 및 관계기관(문화체육관광부,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기관)에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였다.

이번 동의를결의 주요내용*은 ①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** 작성·배포, ②전자계약시스템 도입과 사내 계약관리시스템 개선***, ③하도급거래 가이드 홈페이지 게시 및 내부 직원 대상 하도급법 교육, ④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총 10억 원(각 사 2억 원) 규모의 지원방안(안전장비, 촬영장비 지원 등)을 포함한다.

* <붙임1> 엔터 5사 동의를결 개요 참조

** 표준계약서는 거래유형(영상 제작·굿즈 제작 등)에 따라 모범이 되는 계약서, 가계약서는 주요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가계약서 체결사유, 대금 등 주요 계약조건이 확정되는 시점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말함

*** 전자계약시스템은 거래상대방과 전자서명을 통한 전자적 계약체결시스템이며, 계약관리시스템은 현재 엔터 5사가 자체 운영하는 사내 계약관리시스템을 말함

공정위는 엔터 5사의 자진시정방안이 법 위반 판단시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 균형을 이루고*, 거래질서개선·재발방지 및 상생협력지원 방안의 내용을 볼때 하도급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수급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.

* 대금 미지급 등 다른 법 위반 혐의가 없었고, 서면미발급·지연발급에 관한 기존의 심결례(최근 3년간 서면발급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, 평균 7,281만 원 부과) 등에 비추어볼 때, 신청인이 제안한 상생협력 지원방안의 규모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

엔터테인먼트 분야는 계약 내용이 사전에 확정되기 어렵고 수시로 변경되는 특성*으로 인하여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아,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로서는 항상 거래관계의 불안정성, 분쟁 발생(특히 계약해지·변경시)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었다.

* 영상 제작, 공연 등의 경우 수시로 시나리오 등이 변경되어 용역 착수 시점에 계약 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움

이러한 상황에서 금번 동의를결은 표준계약서·가계약서 작성에서부터 임직원 교육, 계약체결 및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자 보호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, 나아가 K-엔터 업계 전반에 공정과 상생의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한편,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를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조 및 용역 하도급 분야에 최초로 동의를결 제도가 적용된 사례*로서, 동의를결 이행과정에서 관련 업계와 협업하여 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 체결 등의 관행을 확산시킬 예정이다.

* 건설하도급분야에서는 2024년 4월 (주)유진종합건설에 대해 최초 적용된 바 있음

향후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엔터 5사가 본건 동의를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며, 앞으로도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.

<붙임1> 엔터 5사 동의를결 개요

<붙임2> 동의를결 제도 참고 자료

<붙임3> 하도급법상 동의를결 제도 관련 규정

담당 부서	기업거래결합심사국 신산업하도급조사팀	책임자	팀 장	김태종 (044-200-4593)
		담당자	사무관	권태균 (044-200-4596)



1 동의의결 신청 개요

- (신청 경위) 공정위는 '23년 7월부터 엔터테인먼트 업계 5개 사*(이하 '엔터 5사'라 한다)의 하도급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조사 중이었으며, 엔터 5사는 '24년 4월~5월 각각 동의의결을 신청하였고, 이에 공정위는 '25. 12. 2.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를 인용하였다.
- * ▲(주)하이브, ▲(주)에스엠엔터테인먼트, ▲(주)와이지엔터테인먼트, ▲(주)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, ▲(주)스타쉽엔터테인먼트
- 공정위는 엔터 5사가 수급사업자에게 음반, MD 상품 등의 제조, 영상·콘텐츠, 공연 등 관련 용역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하여 조사 중이었다.
- 엔터 5사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,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와의 상생·협력을 도모하고자 자발적으로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였다.
- (의견 수렴) 공정위는 엔터 5사와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였고, 이에 대해 2025년 2월 4일부터 3월 21일까지 1개월 간 관계부처 및 수급사업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.
- (최종 의결) 공정위는 동의의결안의 거래질서 회복 효과 및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등 적절성을 심의하여 2025년 6월 9일 최종 의결하였다.

<엔터 5사 동의의결 경과 요약>

○ 2023년 7월 ~ 8월	공정위, 엔터 5사 조사 착수
○ 2024년 4월 ~ 5월	엔터 5사,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
○ 2024년 12월 2일	공정위,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
○ 2025년 1월 31일	공정위,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
○ 2025년 2월 4일 ~ 3월 21일	공정위, 이해 관계인 및 관계 부처 의견 수렴
○ 2025년 6월 9일	공정위, 최종 동의의결 인용결정

2

동의의결 주요 내용

□ (의결 내용) 공정위는 엔터 5사에 대해 ‘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, ‘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의 재발방지 ‘수급사업자에 대한 상생협력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정방안을 의결하였다.

○ (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) 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를 작성·배포, 전자서명을 통한 계약체결과 전자적 계약관리시스템 구축, 하도급거래 가이드 홈페이지 게시

구분	방안 내용	이행계획
표준계약서 작성·배포	하도급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내 배포	- 표준계약서(안) 작성 및 공정위 검토 : D+6개월* * 의결서 송달 후 6개월을 의미, 이하 동일 - 계약서(안) 수정·보완 : D+9개월
가계약서 작성	과업범위, 대가 등의 사전 확정이 어려운 엔터업계 특성을 고려한 가계약서 양식*을 마련 및 사내 배포 * ①가계약서 체결 사유, ②미확정 사항 확정일 및 정식계약 예정일, ③향후 하도급 대금 결정 방식, ④정식계약 체결 전 계약 해지 시 대금 정산방식 등 포함	- 가계약서(안) 작성 및 공정위 검토 : D+6개월 - 계약서(안) 수정·보완 : D+9개월
전자계약 체결시스템 도입	수기계약이 아닌 전자문서 발송 및 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한 전자계약 체결 시스템 도입	- 시스템 도입 : D + 12개월 - 시스템 도입 후 2년 내 전체 계약 중 70%이상을 전자계약 (1년 내 : 50%이상 / 2년 내 : 70%이상)
계약관리 시스템 개선	계약별로 계약명, 체결일, 계약기간 및 과업기간, 하도급대금 및 지급기일 등을 목록화하고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기존 시스템*에 도입 * 회사별로 자체적 행정관리 시스템은 기 보유	- 시스템 개선방안 공정위 제출 : D+3개월 - 방안 검토 및 확정 : D+6개월 - 방안 확정 후 12개월 내 개선완료
하도급거래 가이드 배포	원·수급사업자 의무 및 권리, 상생협력 지원방안, 분쟁신고 채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 게재 및 수급사업자에게 송부	- 가이드(안) 공정위 제출 : D+3개월 - 검토 및 확정 : D+6개월 - 확정 후 즉시 홈페이지 게재, 수급사업자별 1회 개별 송부

○ (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의 재발방지) 임직원에 대한 하도급법 교육 실시

구분	방안 내용	이행계획
하도급법 교육	계약체결 담당 직원의 80%이상이 공정위가 '승인'하는 전문가로부터 하도급법 교육을 수강	의결서 송달 후 36개월 간, 연 1회 및 4시간 이상

- (수급사업자에 대한 상생협력 지원) 업체별 2억 원(총 10억 원) 규모의 상생협력 자금을 출연하여 수급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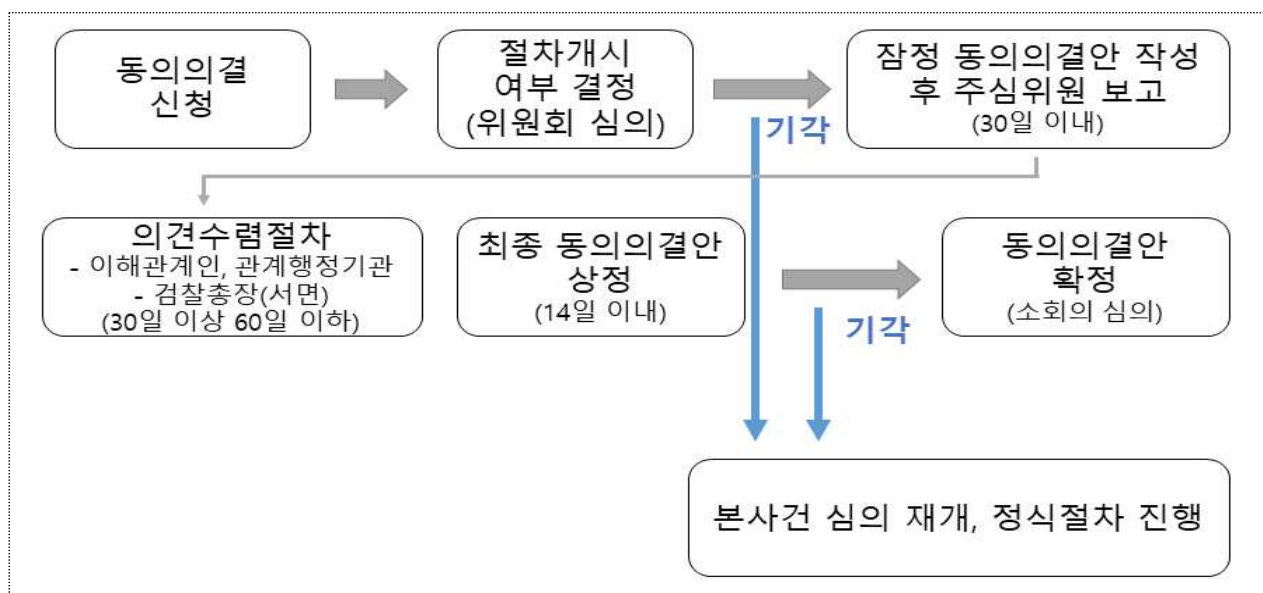
사업자명	방안 내용	기금규모 / 지원시한
하이프	○ 공연분야 수급사업자 안전장비(안전모, 안전장갑, 방음 보호구 등) 구입지원	1억원 / 3년 한도
	○ 영상제작분야 수급사업자 소모품(메모리카드, 배터리 등) 구입지원	1억원 / 3년 한도
SM	○ 수급사업자 직원 건강검진비 또는 명절선물 지원 (반기 1회, 1인당 30만원 한도로 지원)	5천만원 / 3년 한도
	○ 영상제작분야 수급사업자 대상 영상 편집프로그램 라이선스 비용 지원 (반기 1회)	5천만원 / 3년 한도
	○ 영상제작분야 수급사업자 촬영장비 지원 (연 1회)	1억원 / 3년 한도
YG	○ 영상촬영 및 공연분야 수급사업자 대상 안전장비 세트(10만원 상당) 수시 지원	1억원 / 3년 한도
	○ 콘서트, 전시회 등 문화행사 입장권 지원	5천만원 / 3년 한도
	○ 법률·회계 등 교육 수강권, 경영컨설팅 이용권 제공	5천만원 / 3년 한도
JYP	○ ▲안전화 구입지원, ▲촬영·영상장비 구입지원 또는 무상대여, ▲소모품(사무용품, 배터리, 메모리 등) 구입지원* * 수급사업자 당 100만원 한도	1억2천만원 / 3년 한도
	○ 수급사업자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(1인당 30만원 한도)	3천만원 / 3년 한도
	○ 명절선물 지원 (신청한 수급사업자 대상 균등지원)	3천만원 / 3년 한도
	○ 최신트렌드, 마케팅 등 교육지원	2천만원 / 3년 한도
스타쉽	○ 영상제작분야 수급사업자 촬영장비 무상대여 (반기 1회)	5천만원 / 3년 한도
	○ 소모품(사무용품, 배터리, 메모리 등) 구입지원* * 수급사업자 당 100만원 한도	4천만원 / 3년 한도
	○ 명절선물 지원 (반기 1회)	3천만원 / 3년 한도
	○ 소속 아티스트 공연 관람권 지원 (수급사업자 당 50만원 한도)	4천만원 / 3년 한도
	○ 영상제작 강의 수강료 50%지원 (반기 1회)	4천만원 / 3년 한도

□ 동의의결이란?

-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, 거래 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,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방안의 신속한 집행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

□ 동의의결 절차

- 사업자의 신청 → 동의의결 개시 여부 결정 → 잠정 동의의결안 작성 → 의견수렴절차 → 최종 동의의결안 상정 → 동의의결안 심의·확정



□ 동의의결의 요건

- (소극적 요건) ① 하도급법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, ②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지 않을 것
- (적극적 요건) ① 법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, ②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하도급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수급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

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】

제24조의9(동의의결)

-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원사업자 등(이하 이 조에서 “신청인”이라 한다)은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(이하 이 조에서 “해당 행위”라 한다)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의 자발적 해결,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.
 1. 제32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
 2.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
-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 1.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
 2. 해당 행위의 중지,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하도급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
 3. 그 밖에 수급사업자,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
-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(이하 “시정방안”이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(이하 “동의의결”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.
 1.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
 2.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하도급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수급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
-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,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.

제24조의10(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)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같은 법 제90조제1항 중 “소비자”는 “수급사업자”로,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“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”은 “이 법 제29조 및 제30조”로 본다.